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대상 중 개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조정하며,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과오납한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설립인가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며,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범위 확대 및 개인보증한도 조정(안 제2조제3호, 제16조제3항제1호)
- 나. 금융회사 출연금 과오납에 대한 구제 근거 마련 (안 제5조의5)
- 다. 재단 설립인가 서류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호)
- 라. 재단 및 중앙회의 개인정보처리 근거 명시 (안 제26조)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 중이나 폐업한 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5조의3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서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취임승낙서”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개인신용보증회계 안에서 운용되는”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5천만원으로 할”을 “폐업 전에 신용보증한 금액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로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호부터 제9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따른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관련 사무
4.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관련 사무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 관련 사무
6. 법 제35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업무 관련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관련 사무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생략)
2.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②·③ (생략)

제16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①·

② (생략)

③ 법 제19조제2항(법 제35조의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 8억원으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 안에서 운용되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할 것. 다만, 시·도지사로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

-----  
-----.

1. (현행과 같음)

2. -----  
----- 취임승낙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 제2조제3호에 따른 -----

-- 폐업 전에 신용보증한 금액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

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생략)

<신설>

-----  
-----  
--.

2. (현행과 같음)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호부터 제9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따른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관련 사무
4.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관련 사무

제26조 (생략)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 관련 사무

6. 법 제35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업무 관련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관련 사무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연 락 처	042 - 481 - 4388